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9년 12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
○ 기록물의 보존·관리 및 활용, 기록물 보존분담 등 기록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○ **분장사무 추가**

-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

3. 조례개정안 : 붙임

4. 입법예고 : 생략(성주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)

5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

6. 참고사항

가. 협의사항 : 해당없음
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3항중 33호를 34호로 하고 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3.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분장사무) ①(생략) ②(생 략) ③총무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. 1~32.(생략) (신설) 33. (생략)	**제4조(분장사무)** 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③총무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. 1~32.(현행과 같음) **33.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** **34.** (현행 33호와 같음)